근무 중 상해사망 직원 보상 청구 방법

노동부

소개

본 리플렛은 상해사망 사건 보상에 관한 “직원 보상 조례”(이하 “ECO”라고 함)의 주요 조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해석된 조항에 대한 유일한 권한은 여전히 ECO 에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I.《ECO》적용범위 및 보상 종류

만약 직원이 고용 근무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혹은 규정된 직업병)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경우 고용주는 《ECO》에 의거하여 i）생존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사망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또한 ii） 사망한 직원의 장례식 비용과 의료비용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i) 사망 보상

합법적인 가족 구성원

사망 보상금은《ECO》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사망한 직원의 합법적인 가족 구성원들에게 배분되어야 합니다（세부내용은 첨부된 “표” 참고）. 《ECO》에 따른 사망한 직원의 「가족 구성원」（혈연관계인지 법적으로 인정된 입양가족인지 여부와 관계없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혹은 동거인（「동거인」은 관련 사고가 발생할 당시 해당 직원의 아내 혹은 남편으로서 같이 생활하고 있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자녀;
- 부모、조부모 혹은 외조부모; 또는
- 사고 발생 전 24 개월간 동일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직원과 함께 거주해온 손자손녀, 외손자 외손녀, 양부모, 양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혈연관계에 있는 형제 또는 자매의 자녀, 이복형제 및 이복 자매

사망 보상금 계산 방법

<table>
<tr><th>사망한 직원의 연령</th><th colspan="2">보상금액</th></tr>
<tr><td>40 세 미만</td><td>84 개월치 수입</td><td rowspan="3">또는 최저 보상금액* , 양자간 높은 금액 기준</td></tr>
<tr><td>40-55 세</td><td>60 개월치 수입</td></tr>
<tr><td>56 세이상</td><td>36 개월치 수입</td></tr>
<tr><td colspan="3">2025 년 4 월 17 일 혹은 이후에 발생한 사고:

(a) 사망 보상금을 계산하는 매달 최고 한도 수입: $38,670; 및

(b) 사망 보상금 최저 금액: $514,510

2023 년 4 월 13 일부터 2025 년 4 월 16 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

(a) 사망 보상금을 계산하는 매달 최고 한도 수입: $36,550; 및

(b) 사망 보상금 최저 금액: $486,300</td></tr>
</table>

(ii) 장례비용 및 의료비용

사망한 직원의 합리적인 장례비용과 의료비용의 경우 고용주가 해당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 가능한 장례비용과 의료비용의 최고 한도 금액은:

- 2025 년 4 월 17 일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98,950.
- 2023 년 4 월 13 일부터 2025 년 4 월 16 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94,690.

Ⅱ. 사망 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

(i) 노동부 처장의 결정

적용 범위

노동부 처장(「처장」)의 판단을 위해 사망사건에 대한 고용주의 서면 동의서와 청구인의 청구서가 접수되고, 노동부 처장(「처장」)이 사망 보상금 청구가 자신이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처장은 지불해야 하는 사망 보상금 및/혹은 장례비용과 의료비용 금액 그리고 해당 보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사망 보상:	직원 사망일로부터 6 **개월내** 제출
장례비용 및 의료비 보상:	직원 화장 혹은 매장일로부터 30 **일내** 제출, 혹은 노동부가 고용주의 서면 동의서를 받고 결정한 날짜로부터 30 일내, 이 두 날짜 중 더 늦은 날짜 기준.

결정 및 증명서 발급

사망 및/혹은 장례비와 의료비용에 대한 보상 청구가 결정된 후 처장은 모든 청구인과 고용주에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증명서에는 지불해야 할 보상 금액과 합법적으로 지불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 또는 청구인은 처장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통지서를 받으면 처장은 자신의 결정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청구 당사자는 처장의 결정에 대해 지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 지급금

만약 노동부 처장이 사망 보상금 청구에 대해 결정할 예정인 경우,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는 (동거인 불포함) 사망 보상금 청구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처장에게 임시 지급금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 지급금 지불 청구를 받은 후 처장은 증명서를 발급하여 결정 세부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임시 지급금은 고용주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초기 지급금 및 향후 매달 지급되는 비용(매달 지급되는 금액은 사망한 직원의 매달 수입의 50%)으로 구성됩니다. 임시 지급금 합계는 사망 보상금 총 금액의 4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향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사망 보상금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ii) 법원의 결정

노동부 처장은 고용주와 사망 사건 청구인 간의 법률 또는 사실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고용주가 사망 보상금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린 처장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청구인들이 ECO 에 따라 청구를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므로 처장이 자신이 청구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들은 직원 사망일자로부터 24 개월내에 지방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은:

(a) 법무지원부에 법률적 조력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지방 법원에 직접 청구하거나; 혹은

(c) 자신들을 대리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사망사건 담당부서(「담당부서」)는 청구인의 요청 시 청구인을 법무지원부 또는 지방법원에 회부하여 법률 지원을 받도록 하거나 혹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Ⅲ 노동부 처장 결정에 따른 사망 보상금 청구 방법

노동부 처장의 사망보상금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담당부서와의 인터뷰를 예약해야 하고 예약된 인터뷰에 올 때 아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a) 청구인의 신분증;

(b) 사망한 직원의 신분증;

(c) 사망한 직원의 사망 증명서, 혹은 사체 매장/화장 허가 증명서; 및

(d) 청구인과 사망한 직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혹은 거주 증명서)

홍콩 이외 지역 거주로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청구인의 경우,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대신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 가능하며 하기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청구인의 신분 증명 문서 (예: 신분증, 여권);

(b) 청구인과 사망한 직원 관계 증명서 혹은 문서; 및

(c) 청구인을 대리하여 ECO에 따라 사망 보상금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의 신원을 명시한 위임장

만약 상기 문서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가 아닐 경우, 해당 문서(만약 문서가 중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영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는 지방의 발급 기관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국 외교부 영사부서의 직원 (만약 관련 문서가 중국에서 발급된 경우), 또는 해외 중국 영사관 영사 (만약 관련 문서가 중국 이외 기타 국가에서 발급된 경우)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Ⅳ. 고용주가 진행하여야 할 사항

사고가 보상금 지급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후 7 일 이내에 고용주가 처장에게 규정된 양식(예. 표 2/표 2A)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망 사고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고《ECO》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주가 처장에게 사고에 대해 통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고용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며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고 $50,000 의 벌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만약 ECO 에 따른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관련 법적 책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청구를 판결하는 노동부 처장에게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후 어떠한 당사자도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증명서에 따라 사망 보상금 및/혹은 장례비용과 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증명서 혹은 검토 증명서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증명서 혹은 검토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추가로 부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동시에, 고용주는 법률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며, 유죄로 판결될 경우 최고 $100,000 벌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노동부 직원 보상과
사망사건 처리 담당부서
홍콩 중환 통일 부두 도로 38 호
해강정부청사 6 층
전화：2852 3994
팩스：2854 4166

(본 리플렛의 내용은 노동부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ur.gov.hk)

노동부
04/25

별첨 표: 사망 보상금 배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가족 구성원	보상 배분
1. 배우자/동거인만 있을 경우	배우자 /동거인에게 100% 지급
2. 자녀(들)만 있을 경우	자녀(들)에게 100% 지급
3. 부모/조부모/외조부모만 있을 경우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게 100% 지급
4. 배우자/동거인 및 자녀(들)만 있을 경우	배우자/동거인에게 50% 지급 자녀(들)에게 50% 지급
5. 배우자/동거인 및 부모/조부모/외조부모만 있을 경우	배우자/동거인에게 80% 지급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 20% 지급
6. 배우자/동거인、자녀(들)및 부모/조부모/외조부모만 있을 경우 (다른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 존재 여부와 상관없음)	배우자/동거인에게 45% 지급 자녀(들)에게 45% 지급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게 10% 지급 기타 가족 구성원은 지급 대상이 아님
7. 자녀(들)및 부모/조부모/외조부모만 있을 경우	자녀(들)에게 80% 지급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게 20% 지급
8. 생존하는 배우자/동거인, 자녀(들) 또는 부모/조부모/외조부모가 없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만 있을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100% 지급
9. 배우자/동거인 및 기타 가족 구성원만 있을 경우	배우자/동거인에게 95% 지급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5% 지급
10. 자녀(들) 및 기타 가족 구성원만 있을 경우	자녀(들)에게 95%지급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5% 지급
11.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및 기타 가족 구성원만 있을 경우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게 95% 지급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5% 지급
12. 배우자/동거인, 자녀(들) 및 기타 가족 구성원만 있을 경우	배우자/동거인에게 50% 지급 자녀(들)에게 45% 지급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5% 지급
13. 배우자/동거인,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및 기타 가족 구성원만 있을 경우	배우자/동거인에게 75% 지급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게 20% 지급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5% 지급

14. 자녀(들),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및 기타 가족 구성원만 있을 경우	자녀(들)에게 75% 지급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게 20%지급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5% 지급

참고 1 : 동일한 카테고리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명 이상인 경우, 보상금 금액은 동등하게 배분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직원의 부모 및 조부모/외조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이 가족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부모에게 70% 지급
조부모/외조부모에게 30% 지급

참고 2 :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사고 발생 시점부터 24 개월전부터 동일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직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손자손녀, 외손자 외손녀, 양부모. 양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혈연관계에 있는 형제 또는 자매의 자녀, 이복형제 및 이복 자매가 포함됩니다.